

도시가계조사 사례집

1997. 9.



통 계 청
서울통계사무소

Handwritten signatures and marks.

707



310.111
E14E
Y1993

도시가계조사
사 레 집

1997. 9

통 계 청
서울통계사무소

B61720

차 례

I. 일반적인 유의사항	3
II. 조사대상에 관한 사항	4
III. 가구실태에 관한 사항	12
① 가구구분	13
② 가구원수	19
③ 취업인원수	20
④ 가구주	24
⑤ 기 타	25
IV.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7
부록 : 품목분류 사례	43

I. 일반적인 유의사항

1. 이 사례집은 서울지역의 도시가계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수집하여 조사지침서의 보충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침서에서 자세히 언급하지 않은 사항과 애매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수록하였습니다.
2.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기본원칙을 적용시키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황이 동일하지 않는 한 여기에 수록된 내용과 다를 수도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3. 이때 조사담당자가 인지한 사실과 응답자의 응답내용이 다를 때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통계조사는 사실상의 상태를 조사하는 것이므로 명백한 사실을 기준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조사담당자가 응답자로 하여금 진실한 응답을 얻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우리 사무소에서 적용시켰던 대표적인 사례를 수록하였습니다.
4. 또한 '97. 10월 신표본 조사시부터 변경되는 조사사항 및 품목분류 내용을 반영하여 이에 맞게 적용하였습니다.
5. 앞으로 조사현장에서 일어나는 조사상의 의문점이나 여러 사람이 참고가 될만한 사항을 중심으로 본 사례집을 보완해 나갈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바랍니다.

II. 조사대상에 관한 사항

◆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2인이상의 가구로서
정상적인 가계수지 파악이 가능한 가구
(적격가구)

- 조사대상이외의 가구 및 가계수지 파악이 곤란한 가구는 제외(부적격가구)

◆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적격가구

- 농가, 어가, 1인가구, 음식점·여관·하숙업 경영가구, 영업상 사용인이 2인 이상 동거가구, 혈연관계가 없는 자취가구, 외국인 가구, 부정기적 출타가구

※ 도시가계조사에서 농·어가의 기준은 일정 영농규모 이상을 경작하는 가구이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가구주의 생업을 기준으로 하므로 양 조사간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함

- 가구주가 농·어업에 종사하는 인근노동자인 경우
 - 도시가계조사 : 비농가(근로자가구)
 - 경제활동인구조사 : 농가

1. 광명암의 암자가구로 신도 등 여러사람들이 암자에서 식사하는 경우?
 - 일정한 가게를 유지하지 못하여 가게수지 파악이 곤란하므로 부적격 처리

2. 맞벌이부부로 가구주는 주로 화실에서 지내고 처는 친정집에 자녀를 맡기고 친정에 자주 다니면서 자녀와 같이 생활 할 때가 많아 집에서는 대체로 식사하지 않을 경우?(가구주 : 대학교 임시강사. 비영리 화실경영, 처: 중학교 미술교사)
 - 정상적인 가게생활이 아니므로 가구의 가게수지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부적격 처리

3. 45세 남자 가구주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들이 있는 가구로서 가구주의 잦은 출장과 아들의 잦은 가출로 정상적인 가게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 가구주 및 가구원의 부정기적 출타가구로서 정상적인 가게수지 파악이 곤란하므로 부적격 처리

4. 가구주와 조카, 비혈연 가구원이 각자 10만원씩 각출하여 생활할 때 적격여부?
 - 비혈연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로서 정상적인 가게 생활이라 볼 수 없고 가구의 가게수지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부적격 처리

5. 수입품을 취급하는 점포를 경영하는 가구로서 부부가 자주 일본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므로 가끔 집을 비우고 집에서 거의 식사를 안하며 집에서 사용하는 돈과 영업상 사용 하는 돈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적격여부?
- 부정기적 출타 가구로서 정확한 가계수지 파악이 곤란하므로 부적격 처리
6. 음식점을 경영하는 가구로 부부는 가게에서 주로 식사를 하고 아이들도 가게에서 음식을 가져다 먹는 경우?
- 주로 부부가 음식점에서 식사하며 음식을 가져다 먹으므로 정확한 가계수지 파악이 곤란하기 때문에 부적격(음식업) 처리
7. 남편은 택시운전기사, 아내는 조사구 옆에서 다방을 경영하는 고용주로서 거의 다방에서 식사를 하며 종업원들과 침식을 함께 할 때가 많은 경우?
- 종업원들과 같이 식사를 할 때가 많으므로 영업상 식료품비와 가정에서의 식료품비 지출구분이 어려워 가계수지 파악이 곤란하므로 부적격 가구로 처리

8. 음식점의 병용주택은 아니지만 자영 음식점에서 가족이 식사하는 경우?

- 영업장소에서 가구원 모두가 월간 15일 이상 식사하는 경우 부적격가구로 조사
- 주거지역에서 식사하고 가끔 음식점에서 식사하는 경우는 적격가구로 조사

9. 혈연가구원(조카 삼촌 등)이 동거하면서 식사비에 상응하는 비용을 받는 경우?

- 혈연가구원이 학생의 부모로부터 쌀값 정도의 적은 돈을 받는 경우는 적격가구로 조사하고, 수증 및 보조로 처리
- 하숙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받는 경우는 부적격 가구
- ※ 친척이 없으면서 쌀값 정도 받으면 적격 가구이며 부업소득으로 처리

10. 겸업 농가인 경우로 가구주가 학교 선생이고, 부인은 자기소유의 과수원에서 틈틈이 일을 하는 경우?

- 200평 이상 경작하면 농가로 보아 부적격 가구로 처리

○ 200평미만 경작하면 봉급자 가구로서 적격가구로 처리

※ 논·밭은 300평이상, 과수나 묘목은 200평이상 경작하는 경우 농가로 구분

11. 별도 가구의 가구원 전원이 다른 가구에서 계속적으로 식사를 하는 경우?

○ 식사제공을 받는 가구는 부적격 가구

○ 제공하는 가구는 적격가구로 조사

12. A, B가구 모두 가계부를 쓰는 가구임(친척관계)
B가구에서 몹시 아파서 B가구는 A가구에 식비 20만원을 주고 식사를 제공 받아 B가구는 식료품비가 거의 나오지 않고 상대적으로 A가구에서는 식료품비가 많이나옴. 이때 B가구의 적격여부 및 A가구에서 받는 20만원의 식비 처리 방법은?

○ B가구는 조사월에 부적격 처리

○ A가구는 적격 가구로 조사하며, 식비 20만원 받은 것은 비정상 소득으로 처리

13. 3남매가 함께 사는 가구인데 전원이 집에서 식사를 하지 않아 식료품비가 안나오고 거의 밖에서 사먹을 때 적격여부?

- 적격가구이며 밖에서 사먹은 것은 “외식”으로 분류

14. 친척이 동거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 하숙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아 침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하숙업으로 보아 부적격가구로 처리
- 교제 성격으로 약간의 생활비를 내놓는 경우는 적격가구로 처리하고, 그 소득은 부업소득(021)으로 분류

15. 가구주가 선원이나, 항공기 탑승원으로 장기간 부재할 경우?

- 장기간 부재로 가구주의 지출부분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부적격가구로 처리

16. 노인 부부만 사는 가구의 노부부가 자녀집을 방문하여 자주 집을 비우는 경우?

- 부정기적 출타가구로 부적격가구

17. 한국으로 귀화한 외국인 가구인 경우?

- 귀화한 사람의 가구는 적격가구이나, 기입 능력이 없는 가구는 부적격가구로 처리

18. 점장이, 무당, 조산원등 여러사람이 모여 식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가구인 경우?
- 주로 숙식을 같이하는 경우는 일정한 가계를 유지하지 못하므로 부적격가구로 처리
19. 형제, 자매끼리 자취하는 가구인 경우?
- 일정한 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적격가구임
20. 사촌, 삼촌, 조카등 친인척끼리 자취하는 가구인 경우?
- 한사람의 생계 책임자를 중심으로 일정한 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 적격가구
 - 서로 수입과 지출을 별개로 하면서 단지 동거하는 형태는 부적격 가구로 처리
21. 부모님이 거주하는 거처에 결혼한 딸의 가족이 들어와 별개의 가구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식사는 부모님 집에서 하고 있는 경우?
- 식사를 제공해주는 쪽의 부모님은 적격가구
 - 식사를 제공받는 쪽의 딸의 가구는 부적격가구로 처리

22. 농가에서 자기 농토는 없고 임금을 받는 농업노동자인 경우?
-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농가로 분류하나, 도시가계에서는 비농가 가구로서 적격가구임.
 - 가구구분은 노무자(122)
23. 가구주가 임금근로자 또는 사업자 이면서 기타가 구원이 자영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인 경우?
-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농가기준에 맞는 농업에 종사할 때는 부적격 가구로 처리
24. 가구주 이외의 가구원이 단순 노동으로 수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 단순노동으로 수산물을 채취하므로 적격가구임
25. 음식, 여관, 하숙업을 경영하는 병용가구인 경우?
- 영업 및 주거 겸용을 같이하는 가구는 식료품비와 기타 경비를 영업상의 경비와 분리하기 곤란하므로 부적격 가구
 - 단, 영업장소와 주거지가 따로 떨어져 있어 영업상의 식료품비 지출과 기타경비가 분리되는 경우는 적격가구로 처리

Ⅲ. 가구실태에 관한 사항

- ◆ 가구구분 : 가구주의 직업에 따라 분류
 - 직업이 2개이상일 경우 ① 취업시간이 많은 직업, ② 소득이 많은 직업, ③ 최근 직업순으로 결정

- ◆ 가구원수 : 조사대상기간동안 대상가구의 가구원으로 취사, 취침,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 ◆ 취업인원수 : 조사대상기간중 수입을 목적으로 1/2이상 일한 사람,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 가사나 학업을 주로하면서 틈틈이 일을 한 사람은 취업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한 일의 소득은 가계부에 기입함

- ◆ 가구주 :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을 조달하는 사람

- ※ 도시가계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가구주 개념이 상이하어 가구주가 서로 다른 경우 도시가계조사의 가구주 개념을 준용함

① 가구구분

1. 무직인 가구주와 취업자인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가구구분 분류방법

- 가구주가 무직이라 할지라도 취업가구원의 소득이 가계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고 이자수입 또는 재산수입 등으로 생계책임을 지고 있다면 그 가구내 취업자가 있어도 무직가구로 분류
 - 따라서 무직가구인 경우에도 취업자가 나올 수 있음
- 가구주가 조사대상기간 중 무직이면서 생계책임을 다른 가구원이 지고 있는 경우
 -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가구원으로 가구주 변경
- ※ 가구주가 일시적으로 병이나 실직에 의해 생계책임을 지지 못할 경우에도 해당기간동안 소득이 있고 생계를 책임지는 다른 가구원으로 변경해야 함

1-1. 가구주는 다른 직업이 없고 재산 및 이전소득이 있으면서 가구원이 근로 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재산 및 이전소득이 그 가구의 생계를 유지하는 주된 소득이라면 무직가구(291)

- 가구원의 근로 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주된 생활비를 충당한다면 그 가구원을 가구주로 재 선정하고 가구구분도 변경
- 1-2. 가구주가 일이 없어서 한, 두달 무직자가 되고 동시에 가구원이 일시적으로 취업자가 되는 경우?
- 조사대상기간 중 실제 취업하고 있는 가구원을 가구주로 선정하되 가구원의 소득이 생계를 위한 주된 소득원이 되어야 함. 만약 가구원의 소득이 생계를 위한 생활비로 쓰여지지 않을 경우 무직가구로 처리
- 1-3. 부모와 딸이 사는 가구로 아버지는 무직자고, 딸이 취업하여 월 40만원의 소득이 있으나 전혀 생활비에 충당하지 않고 부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 가구원이 취업하여 소득이있다 하더라도 그 소득이 생활비에 전혀 충당되지 않고 그 가구원이 별도로 관리한다면 비록 무직이지만 실질적인 생계책임자인 부를 가구주로 하여 무직가구로 분류
- 1-4. 남매 3명 자취가구에서 부모님 보조로 주로 생활을 하는데 그중에서 한명이 취업자인데 생활비를 전혀 내놓지 않고 자기 용돈으로 사용할 때 처리방법

- 무직가구로 처리하고 취업자인 가구원의 소득은 가구원소득(017)으로 분류(조사담당 통신란에 내용을 자세히 기입)
2. 가구주가 일일 노무자인데 조사월에 질병 또는 일거리가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
- 15일 이상 일을 했으면 노무자로 분류하고, 15일 미만 일했으면 무직가구(291)로 분류
3. 가구주가 보험회사 생활설계사(외무사원)인 경우?
- 회사로 부터 일정한 봉급을 받고 본인능력에 따라 수당이 가산되면 근로자가구(112)로 분류하고
 - 일정한 봉급이 없고 단순히 실적에 따라 수당만 받는 경우는 상인가구(211)로 분류
4. 화물트럭을 가지고 회사에 들어가 지입제로 화물 운송일을 할 때의 구분방법
- 가구구분은 가구주의 산업, 직업, 종사상의 지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이 경우 종사상 지위를 우선 고려
 - 피고용자의 위치에서 일정한 봉급이나, 노임을 받을 경우 근로자가구(121)로 분류

- 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자신의 장비로 서비스를 판매하고 그 댓가로 실적급의 소득을 얻는 경우는 상인가구(211)로 분류

5. 가구주가 여러집을 돌아다니며 파출부일을 하는 경우?

- o 일정한 기간 및 시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일을 하여 주는 사람은 여러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구(122)로 분류
- o 틈틈히 또는 가끔 부정기적으로 남의집에 가서 가사일을 돌보아 주는 사람은 취업자로 보지 않음
 - 소득은 부업소득(021)으로 분류하며 가구구분은 무직가구(291)로 처리

6. 도의원의 가구구분

- o 주된 직업이 있는 경우
 - 주된 직업으로 분류하고, 도의원 활동으로 얻어진 소득은 부업소득(021)으로 처리
- o 주된 직업이 없는 경우
 - 무직가구(291)로 분류하고, 소득은 부업소득(021)로 처리

7. 수도 검침원의 가구구분

-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검침을 하면서 사무를 보면
봉급자가구(111)
- 단지 검침만 하는 사람은 노무자가구(121)로
분류
 - ※ 위의 두 경우 모두 직업은 행상 및 단순노무자
(91)로 분류

8. 자영업하는 가구주가 한달에 2가지 일을 겸업하면서 15일을 경과 했을 때 가구구분 및 산업, 직업 등의 변경 여부?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 수확기에 남의 밀감 밭에서 15일이상 밀감을 따주고 얻은 소득이 있을 때)

- 미용업이 주된업이고 계속성이 있으므로 이에따라 가구구분 및 산업, 직업이 분류되어 야 함

8. 무당가구의 가구구분

- 자유업자(241)로 분류

9. 가구주가 건설현장에서 산재를 당하여 휴직을 하고 조사월에 월급없이 상여금만 받았으며 그 외의 달은 산재보험금으로 생활하는 경우?

- 조사월에 상여금을 받았다면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보아 노무자 가구로 구분하고, 취업인원수에 포함
- 월급없이 산재 보험금 또는 기타 소득원으로 생활한다면 무직가구로 분류

10. 직업근인의 가구구분

-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으므로 봉급자가구로 분류
 - 산업은 L(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직업은 00(무직 및 기타 분류불능)

11. 건축현장에서 십장으로 근무하는데 회사에 고용되어 봉급을 받는 자의 가구구분

- 노무자가구(121)로 분류하고 직업은 건축기능 근로자(71)로 처리

12. 목사의 경우 가구구분 및 소득 분류

- 일정한 교회에 소속된 목사는 봉급자가구(112)로, 소득은 근로소득(010~017)으로 분류
- 부흥목사인 경우는 자유업자(241 또는 242)로, 소득은 사업소득(020)으로 분류

13. 번역가, 화가 등 자유업자의 가구구분 및 소득 분류

- 번역가, 화가의 가구구분은 자유업자(241 또는 242)로, 소득은 사업소득(020)으로 분류

② 가구원수

1. 이혼한 가구주(여자)가 모친과 같이 국적이 미 국인 5살된 아들과 살고 있어 가구표와 가계부 상의 가구원수에서 아들을 제외시켰으나 가계부 내용에는 아들의 지출 품목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경우?
 - 아들이 미국 국적을 갖고 있으나 가구주와 기타 가구원이 한국인이고 가구주와 아들이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으므로 가구원수에 포함
2. 요양을 위하여 잠시 다른 곳에서 휴양중인 가구원 인 경우?
 - 조사대상기간중 15일이상 같이 살았으면 가구원 수에 포함하며, 15일미만 살았으면 제외
 - 또한 상주하던 가구원이 15~20일정도 휴양하는 경우라도 휴양기간중 그 가구원의 지출내역이 파악된다면 가구원수에 포함

3. 회사 기숙사에서 기숙하는 아들이 일주일에 한번 씩 집에 오는 경우?

<한달에 65만원(046)을 집에 가져다주나 이 아들의 적금(921)이나 빚비사용료(824) 등으로 사용>

o 기숙사에서 거주하므로 가구원수에서 제외시킴

9. 군인간 아들이나 방학중인 자녀가 잠시 집에 다녀가는 경우?

o 군인간 아들은 통상적으로 휴가가 15일 미만이므로 가구원수에서 제외

o 외지에 취업 및 취학 중인 자녀가 집에 와서 머무는 경우

- 휴일, 공휴일 등에만 집에 와서 한달에 15일 미만인 경우는 가구원수에서 제외

- 방학 중 15일 이상 머무는 경우는 가구원수에 포함

③ 취업인원수

1. 야간학교 학생이면서 주간에 직장을 다니는 경우?

o 취업인원수에 포함시키고 근로 소득으로 분류

2. 주간 학생이면서 야간에 직장에 다니는 경우?

- 신문팔이나, 구두닦이 등을 틈틈히 하여 학비를 조달하는 경우 부업소득(021)으로 처리하고, 취업인원수에 포함하지 않음
- 소득의 대부분이 가계생활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취업인원수에 포함
 - ※ 주간 학생등의 아르바이트는 그 수입이 가계생활비로 충당되지 않을 때는 금액에 관계없이 부업소득(021)으로 처리

3. 친척인 동거인이 취업하고 있는 경우?

- ① 현재 살고있는 가구와 생계를 오랫동안 같이 하여 현 가구주가 동거인의 책임자일 때
 - 취업인원수에 포함시키고 소득 조사
- ② 타지에 동거인의 부양가족이 있거나 동거인에 대한 생계책임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 단순히 취업을 이유로 현재 가구에서 임시 거주하고 있는 형태이므로 취업인원수로 보지 않으며, 현재의 해당가구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소득과 지출을 조사하지 않음

4. 통장을 취업자로 볼 수 있는지?

- 통장은 직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업인원수에서 제외하며, 소득은 부업소득(021)로 분류

5. 파출부, 가내부업의 경우?

- 일정한 기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취업인원수에 포함
- 가끔 부정기적으로 일하면 취업인원수로 포함하지 않고, 그 소득은 부업소득(021)으로 분류

6. 휴직, 연가, 병가 등으로 일을 못했을 경우?

- 1개월간 15일미만 일하고 일한 일수만큼 일당을 받을 때는 취업인원수에서 제외
- 유급휴가, 병가로 회사에서 봉급이 나올 경우에는 취업인원수에 포함

7. 대학생이 과외를 1년내내 하면서 매달 40~5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이 고정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주된 직업은 학생이므로 가계생활비에 충당되지 않으면 취업인원수에서 제외하고, 부업소득(021)으로 분류
- 가계생활비에 대부분 충당되면 취업인원수에 포함하며, 사업소득(020)으로 분류

8. 회사 경리로 근무하는데 회사 사정이 좋지않아 4개월째 급료를 받지 못 하고 있을 때 취업자로 분류해야 하는지 여부?
- 급료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라도 매일 출근하여 일을 하였으므로 취업자로 분류
9. 가구주의 자녀가 취업을 하고 있는데 가계생활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 경우? (봉급을 본인이 전부 사용)
- 소득을 가구에 전부 내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시가계 조사는 가구단위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취업인원수에 포함시킴
 - 자녀의 소득 총액과 용돈, 저축의 종류 및 금액 등 모든 소득과 지출내용을 조사해야 함
10. 자영업 가구에서 무급가족 종사자를 취업인원수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 무급가족 종사자도 조사대상기간 중 15일이상 일을 한 경우 취업인원수에 포함
11. 가구에서 과외지도 , 미술지도, 피아노 렛슨을 하는 경우?
- 다른 주된 일이 없이 이 일에만 종사하는 가구원은 취업인원으로 보며 사업소득(020)으로 분류

- 학교에 다니며 아르바이트식으로 이와 유사한 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부업소득(021)으로 처리하고, 취업인원에서 제외
12. 가사 사용인 및 2인미만의 영업상 사용인이 있는 경우?
- 해당가구의 소득에 증가를 가져오는 사람이 아니므로 취업인원수에서 제외하고 사용인의 소득 및 지출도 제외
 - 단, 가구에서의 사용인에 대한 지출은 포함해야 함
13. ROTC 현역장교가 본가에서 출퇴근하는 경우?
- 취업인원수에 포함시키며 소득조사도 해야 함

④ 가구주

1. 아버지 직업은 일용 노무자이고, 딸은 정상적인 봉급을 받는 사람으로 아버지의 소득은 일이 많은 계절에는 딸의 봉급보다 많고 일이 없을 때는 딸의 봉급보다 적으나 가계운영에 대부분은 아버지의 소득으로 충당하는 경우?
- 딸의 소득이 아버지의 소득보다 일시적으로 많다고 하더라도 그 가구의 가계지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면 아버지를 가구주로 처리

2. 직업은 없으나 세대주인 아버지가 있고, 결혼한 장남이 노동을 하여 가계생활비로 충당하고 있느냐 모든 가계운영은 아버지가 하고 있는 경우?
 - 세대주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아들이 가구주임

⑤ 기 타

1. 연간소득 조사를 실시한 후 가구주의 직업, 취업 가구원수 등의 변화로 가구소득의 변동이 있을 때의 처리방법?
 - 다음에 실시하는 정기 조사시에 변동사항을 반영
2. 연간소득조사에 비경상적인 소득을 포함하지 않는 이유?
 - 도시가계조사는 경상소득과 소비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퇴직금이나 복권당첨금 등의 일시적인 소득을 연간소득에 포함시킬 경우 목적에 적합한 분석이 어렵기 때문임
3. 연간소득을 조사하는데 4개월 동안만 소득이 있었고, 나머지 기간은 저금을 찾아서 생활한 경우?
 - 4개월동안의 소득을 조사

4. 가구실태란의 『무직가구의 주된 소득원』란에서 퇴직금을 은행에 예치해 놓고, 그 이자 및 저금 인출로 생활하는 경우 구분방법
 - 주된 소득원에 비중을 두고 『이자』가 많을 때는 『5. 이자 및 배당금』에 『이자』보다 『저금인출』이 비중이 클때에는 『6. 기타』로 처리

5.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만원을 지불하고 방 2개를 보증부 월세로 사용하는 가구가 다른 가구에 방 하나를 월세 10만원에 주었을 경우 거주형태 및 평가방법
 - 월세 10만원 지출과 임대소득 10만원이 서로 상쇄되므로 계약상으로는 보증부월세 가구이지만 실제 거주형태는 전세라 할 수 있으므로 전세로 구분하고 실제 거주면적에 대한 전, 월세 평가액만 기입

IV.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 은행자동이체 항목

- 조사대상가구가 금융기관을 통하여 봉급이 은행구좌에 자동입금되거나 공공요금 및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자동적으로 지불되는 경우 기입하는 항목

◆ 전월에서 넘어온 현금

- 전월말일까지 쓰고 남은 현금으로 금월에 이월된 액수 기입

◆ 수입

- 가계로 들어온 현금이나 현물을 모두 기입

◆ 지출

- 가구에서 구입한 물건값이나 교육비, 각종 수리비 등의 서비스대금을 지불한 금액 기입

1. 무직가구가 퇴직금을 보통예금으로 저금하여 놓고 통장에 이자가 자동적으로 입금되어 찾아쓰는 경우에 이자인지, 예금한 원금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의 처리방법은?

- 보통예금이 주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저축찾은 금액(070)으로 처리
2. 전세 2,000만원에 살고있는 가구가 전세금 500만원 인상으로 인하여 인상액을 지불할 수 없어 인상금(5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 경우?
- 인상금 500만원은
 - 수입란에 주택관계 빌린돈(080)
 - 지출란에 전세금 빌려준 돈(927)으로 분류
 - 매월 지불되는 이자는 이자(908)로 분류
 - 가구실태란에 전세금 2500만원으로 기입
3. 보험회사 직원이 피보험자 모집을 위해 점심식사를 제공한 경우 식사비에 대한 분류?
- 근로자로 분류되는 영업사원이 점심을 제공한 경우는 외식비
 - 근로자외의 자영자(상인)로 분류되는 영업사원이 점심을 제공한 경우는 영업비용으로 보아 가계부에서 제외
4. 한방보약, 기타 한약, 한방진료비간에 분류기준?
 <한의원에 진료를 목적으로 갔다가 의사의 권유에 따라 약을 조제했을 경우(진료비와 약값이 구분안되는 경우) 및 한약방에서 감기약을 조제했을 경우 등>

- 한방진료비는 순수진료비만 나올 경우 즉 침술, 뜸등이 나오는 경우에 한하고 약을 조제할 경우는 한방보약이나 기타 한약으로 분류
 - 치료하면서 치료약을 동시에 가져오면 662(기타 한약)로 분류
5. 「회비 및 교제비」와 「송금 및 보조」간의 분류 기준?
- 정상적으로 타가구에 보조를 해 준 경우는 송금 및 보조
 - 비정상적인 경우는 지출되는 금액의 성격에 따라 분류(911, 912, 893)
6. 의료보험 초과일수에 대한 병원비의 분류?
- 병원 진료에 대한 지출이므로 병원비(681)로 분류
7. 가구원이 아닌 타지에 사는 딸의 결혼비용에 대한 조사여부 및 분류방법
- 조사가구에서 주관할 경우 가계부상의 지출항목에 기입하고, 품목별로 분류

8. ROTC 대학생이 장학금을 받은 경우?

- 소득란에 기타 비경상소득(065)으로 분류함과 동시에 지출란에 대학등록금으로 처리
- 단, ROTC대학생이 장교 군복무 조건으로 장학금을 받고 이를 다시 군입대하지 않으려고 반납한 경우 부채감소(939)로 분류

9. 군인간 아들이나 방학중인 자녀가 잠시 집에 다녀갈 때 이들에게 든 비용의 분류?

- 가구원수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본가에 머무는 동안 지출한 품목은 각 품목으로 분류
- 군 복무지나 자녀의 자취가구에 가서 주고 온 돈은 기타 송금 및 보조(912)

10. 정신병원에 입원하면서 간간히 지출되는 간식비의 분류?

- 정신병원에 장기요양하는 환자일 경우 가구원에서 제외되므로 기타 송금 및 보조(912)
- 단기적으로 잠깐 입원한 경우는 조사가구원이므로 각 품목별로 분류

11. 학생이 아르바이트로 매월 5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에 대한 분류방법

- 주간학생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 가계생활비로 충당되지 않을 때는 부업소득 (021)
 - 가계생활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010~017)으로 분류

※ 주된 직업이 있는 가구원의 아르바이트 소득은 그 소득의 원천에 따라 분류

12. 남편이 해외취업자인데 잠시 귀국하여 2~3개월간 같이 기거하면서 지출된 내용의 분류?

- 가구원수에 포함하며, 지출된 해당 품목별로 분류

13. 일시적인 소득인 퇴직일시금, 복권 또는 퀴즈당첨금, 축의금, 조의금 등의 비경상소득에 대한 처리방법

- 들어온 총액과 가계생활비에 충당된 금액으로 나누어 조사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
 - ① 퇴직일시금, 복권당첨금 등의 수령총액을 조사하여 소득부호 065를 기입(경조소득은 061)
 - ② 퇴직일시금, 복권당첨금 등으로 들어온 총액중 조사대상기간 동안 실제로 가계비로 쓰여진 금액을 조사하여 소득부호 066을 기입(경조소득은 062)

③ 일일가계수지란 하단의 995 합계란에는 비경상
소득 전액(061, 063, 065)만 합산하고 가계로
충당된 금액은 합계에서 제외(지침서 p105참조)

④ 비경상소득 전액에서 가계충당금을 제외한 나
머지 금액은 지출사항별로 빠짐없이 기입

예) 아버지퇴직금 5,000만원중 그달 가계충당금이
100만원일 때

- 기타 비경상소득(065) : 5,000만원
- 가계충당금(066) : 100만원

13-1. 퇴직금 500만원을 받아서 200만원을 그달에 지
출했을 경우 처리방법

- 500만원 전액을 기타 비경상소득(065)으로 분류
하고, 200만원만 가계충당금(066)으로 처리
- 나머지 300만원을 은행에 예금했을 경우에는 저
금(921)으로 처리함

14.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 분류방법

- 취학아동과 동일하게 해당 항목으로 분류

15. 학부모가 학교급식준비를 위하여 봉사하면서 학
교에서 먹는 식사의 분류

- 현물소득(3937)으로 분류하며, 수고비를 부정기적으로 조금씩 받을 경우에는 비경상소득(065)으로 처리
16. 부엌용세제, 세탁용세제, 샴푸, 린스, 화장용비누 등 SET의 분류
- 가격이 가장 비싼 품목에 따라 분류
17. 주택을 증.개축하는데 여러 달이 소요될 때 첫달은 많은 액수가 나오고 그 다음 달부터는 적은 액수(4,000원정도)가 나오는 경우 분류방법
- 금액에 관계없이 주택 증.개축으로 보아 부동산구입(925)으로 분류
18. 일용노무자가 일을 하다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회사에서 병원비를 모두 대주어 그 가구에서는 병원비가 나오지 않을 경우 가구에서 병원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회사에서 나오는 병원비 전액을 기타 비경상소득(065)으로 분류하고, 그 금액만큼 병원입원비(682)로 분류
19. 국가유공자,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중.고고자녀등록금 면제시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 면제된 금액을 수입란에 사회보장수혜(040)로 분류하고 그 금액만큼 지출란에 중.고교등록금(692~694)으로 분류
20. 수도요금을 주인가구에서 세든 가구분까지 미리 납부하고 나중에 세든가구에서 받을 때 처리방법
- 주인가구는 세든 가구 사용분을 뺀 주인가구 사용분만 수도요금으로 기재하고, 세든 가구는 실제로 주인가구에 수도요금을 준 달에 세든 가구 사용분만 기입
 - 주인가구에서 세든가구분까지 포함해서 납부했을 경우에는 세든가구분을 빌려준돈(927)으로, 그 돈을 받은 달에 빌려준돈 받음(076)으로 처리
21. 세금을 납부일이 지나서 납부했을 때 연체료의 분류
- 각 세금의 해당품목으로 분류
 - ※ 이 경우 벌금(909)으로 분류하지 않토록 주의
22. 가정용기기(가전제품)의 부품교환시 분류
- 해당 제품의 품목부호 기입
 - 예) 냉장고 수리시 부품 → 냉장고(480)로 분류

23. 가정용기기(가전제품)를 각 가전사에서 출장수리
시 분류
- 가구집기 수선료(574)로 분류
24. 품목이 명시된 상품권(도서상품권)이 선물로 들
여온 경우
- 가구에서 사용했을 경우는 당일에 현물처리
(7337)하고, 그 상품권을 다시 다른 가구에 선물
했을 경우에는 현물수입과 교체비로 분류하지
않고 삭제
25. 쌀 20가마를 임대료로 받았을 경우의 품목분류
- 당월에 일부를 팔았을 경우
 - 쌀을 판 금액만큼은 임대소득(032)으로 분류하
고 나머지 부분은 쌀의 항목부호에 임대소득 추
가 부호(1004)를 기입하여 현물소득으로 처리
 - 다음달에 타가구로 주거나 팔았을 경우
 - 수입과 지출 모두 처리하지 않으며 그 양만큼을
그달의 소비량에 포함
26. 가구주가 회사에서 나온 식권을 사용하고 남은
식권을 동료에게 팔았을 경우
- 회사에서 받은 식권 전액을 식사현물(3931)로 기
입하고 매각한 금액은 재산매각(075)으로 분류

27. 경조소득(061)이 500만원 들어와서 500만원이 모두 총당되었을 때 처리방법
- 500만원 전액을 경조소득(061)으로 분류하고, 가계총당액(062)으로 처리
28. 빈병을 팔아서 500원 수입이 있을 때 처리방법
- 500원 전액을 폐품매각대금(063)으로 분류하고 가계총당액(064)으로 처리
29. 5만원을 세뱃돈으로 받았을 경우 처리방법
- 세뱃돈 5만원을 기타 비경상소득(065)으로 분류하고 가계총당액(066)으로 처리
 - 10만원 미만인 소액의 경우 전액을 그달의 가계총당액으로 봄
30. 자동차 보험을 해제하고 원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9만원만 받은 경우 처리방법
- 기타 비경상소득(065)과 가계총당금(066)으로 분류
31. 친척한테서 예단비로 20만원을 받아서 그 달에 한복을 17만원 주고 해 입었을 경우 처리방법
- 20만원을 기타비경상소득(065)으로 분류하고, 17만원을 가계총당금(066)으로 처리하며, 이때 지출에도 한복(580)으로 분류

32. **예식장에서 점심식사 대신으로 1만원짜리 봉투를 받았을 경우 처리방법**
- 1만원을 기타 비정상소득(065)으로 분류하고, 가계충당금(066)으로 처리
34. **식당을 운영하는데 돈만 투자하고 다른 사람에게 운영권을 맡기어 이익금을 나누어 가질 경우 처리방법**
- 식당을 경영하는 가구로 분류하고 소득은 사업소득(020)으로 처리
35. **가해자 대신 보험회사에서 산재보험료를 피해자에게 보상해 주었을 때 처리방법**
- 가해자 가구에서는 지출로 기입하지 않고 피해자 가구에서만 기타 비정상소득(065)으로 분류
36. **재개발시 이주민 주거대책비를 건설회사에서 줄 때 처리방법**
- 일정액의 금액을 빌려주어 당분간 다른 곳에 살다가 다시 입주할 때
 - 주택관계 빌린 돈(080)으로 분류하고 그 돈을 갚았을 때 주택부금 상환(930)으로 처리
 - 분양권이 없는 사람에게 이사비용 형식으로 줄 경우 기타 비정상소득(065)으로 분류

37. 핸드폰, 빤빤, 카폰가입비 및 가입비 환불시의
처리방법
- 가입시에는 빌려준 돈(927)으로, 가입비 환불시에는 빌려준돈 받음(076)으로 분류
38. 보험회사에서 보험외판은 안하고 교육만 받아주었을 경우 지급되는 교육비와 선물의 처리방법
- 교육비는 부업소득(021)으로, 선물은 비경상 현물 소득으로 분류
 - 예) 주발대접 선물받음(5007)
39.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았을 때 처리방법
- 영세민 무료진료와 1세미만 무료진료는 진료받은 금액을 수입란에 기타 사회보장수혜(041)로, 지출란에 병원비(681)로 분류
 - 친척이 보건소에 근무하여 무료로 진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수입란에 기타 비경상소득(065)과 지출란에 병원비(681)로 분류
40. 가구주가 무직인데 5일 정도 일하고 얻은 소득의 분류
- 부업소득(021)으로 분류
 - 가구주를 취업자로 분류하지 않도록 유의

41. 백화점 상품권이나 그외의 현금상품권의 처리방법

- 기타 비경상소득(065)으로 분류

42. 근로자인 가구주나 가구원의 연간 보상비나 연월차 수당의 분류

- 가구주나 가구원의 근로소득으로 분류(010~017)

43. 공익근무요원의 소득 처리방법

- 군복무를 동사무소 등 관공서의 관련된 부서에서 할 경우 지급되는 수입이므로 부업소득(021)으로 분류

※ 사업체에서 군복무대신 근무하는 방위산업체 근로자는 취업자로 분류하고 근로소득으로 처리함에 유의

44. 시립악단 단원인데 매달 한달에 2~3번 정도 결혼식이나 피로연 등에 참석하여 축가를 불러주고 사례비를 오만원 정도 받았을 때 그 소득의 처리방법

-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경우라면 취업자로 보아 사업소득(020)으로 분류
- 일시적인 경우라면 취업자로 보지 않으며 부업소득(021)로 분류

45. 보험탄 금액의 처리방법

○ 보험가입시 보상이 예상된 보험금

-보험탄 금액(071)

예) 교육보험 가입시에 입학 때마다 보험금이 나오는 것을 미리 알고 가입하는 보험 금액

○ 보험가입시 예상하지 못한 손해보험금

- 기타 비정상소득(065)

46. 부모님과 자녀가 따로 살다가 그달 15일부터 부모님이 자기집을 전세놓고 그 돈으로 아들 집을 사주고 같이 살때 처리방법

○ 15일이상 거주로 이미 그 가구의 가구원이 되었으므로 부모님이 준 돈은 수입란에 저금인출(070)로 분류하고, 지출란에 부동산구입(925)으로 처리

- 이 경우 부모님이 살던 옛집의 지난달 부모의 아파트관리비를 아들이 내주었을 경우에는 기타 송금 및 보조(912)로 분류

47. 무직가구에서 지난달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나올 때 처리방법

○ 가구주 근로소득(010)으로 분류하고 조사담당 통신란에 가구주의 지난달 소득이라고 자세히 기입

48. 무직가구에서 가구주가 10일간 일을 하였고 다음 달에도 계속 취업이 이루어질 때 처리방법

- 취업인원수에는 포함하지 않고 그 소득을 가구주 근로소득(010)으로 분류하고 다음달부터 취업인원수에 포함시키고, 조사담당 통신란에 그 내용을 자세히 기입

49. 시골에 있는 대학에 다니기 위하여 자녀가 3월 6일 전출함과 동시에 부모님이 그 자녀의 자취방을 얻어주고 가전제품을 사주었을 경우

- 15일 이상 거주가 아니므로 가구원에서 제외시키고
 - 자취방을 얻는데 지출된 비용은
 - 전세금일 경우 빌려준돈(927)
 - 월세일 경우 교육비 송금(911)으로 분류
 - 가전제품 구입비는 교육비 송금(911)으로 분류

50. 혈연가구원이며 취업한 동생 또는 삼촌이 동거하며 생활비 명목으로 가구주에게 적은 금액(5만원 정도)을 지급하고 있을 때 처리방법

- 동생 또는 삼촌을 가구원수에는 포함시키나 취업인수 및 소득은 제외하며, 생활비 명목으로 내놓은 금액은 부업소득(021)으로 분류

51. 법인기업체 이사장의 월급 및 추가배당금의 처리 방법

- 월급 : 근로소득(010~018)으로 분류
- 추가배당금 : 배당소득(031)으로 분류

52.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고 있을 때 가입자가 사고를 당하여 보험회사에서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여 줄 때 처리방법

- 그 금액만큼을 수입란에 기타 비경상소득(065)으로 분류하고, 다시 지출란에 저축성보험료(922)로 처리

53. 같은 가구에 거주하는 동거가구원이 과일이나 과자 등을 사왔을 때 처리방법

- 지출란에 해당 품목으로 분류하고, 그 금액만큼 수입란에 부업소득(021)으로 분류

부 록 : 품목분류 사례

1. 식료품(100~399)
2. 주 거(400~429)
3. 광열·수도(430~450)
4. 가구집기·가사용품(460~579)
5. 피복 및 신발(580~659)
6. 보건의료(660~689)
7. 교 육(690~729)
8. 교양오락(730~789)
9. 교통통신(800~829)
10. 기타 소비지출(830~899)
11. 비소비지출(900~939)

1. 식료품 (100~399)

- 배달피자, 냉동피자 : 피자(112)
- 사골우거지국 : 기타육가공품(149)
- 생크림 : 기타우유가공품(157)
- 육 수 : 기타육가공품(149)
- 카레범벅 : 라면(122)
- 핫 바(슈퍼에서 구입시) : 생선묵(190)
- 해바라기씨, 호박씨(안주용) : 기타곡물가공품
(129)
- 흑 미 : 쌀(100)
- 고들빼기(쌈바귀) : 산나물(221)
- 깻잎김치 : 김치(234)
- 냉콩국 : 기타채소가공품(239)
- 마가린 : 기타유지(289)
- 3분카레 : 카레(294)
- 오이소배기 : 김치(234)
- 오이지 : 장아찌(231)
- 오이피클 : 장아찌(231)
- 자기집 텃밭에서 상추를 재배하여 자가소비 했을 때 : 상추 자가생산 소비(2042)

- 즉석미역국 : 해조가공품(249)
- 친척에게 김장비를 주고 김장을 담아올 때
: 김치(234)
- 가공된 핫바를 사먹었을 때 : 기타식품(379)
- 고로쇠물 : 기타음료(359)
- 근로자의 가구 식사현물 : 중장비 운전자가 건
설현장에서 식사현물(3932)
- 길거리에서 파는 커피의 지출비용 : 커피(340)
- 돼지 한마리 잡아준 값 : 식품가공비(380)
- 멸치가루, 새우가루, 버섯가루 : 기타조미식품
(319)
- 분말쥬스, 보리음료 : 기타음료(359)
- 아이스크림재료 : 기타과자(339)
- 자판기의 울무차,썩차, : 기타차(349)
- 죽 전문점에서 죽을 사먹었을 때 : 기타식사의
식(393)
- 즉석 3분짜장 : 기타조미식품(319)
- 즉석단팥죽 : 죽(371)
- 참치죽 : 죽(371)
- 치커리차, 둥글레차 : 기타차(349)
- 캔커피, 자판기 커피 : 커피(340)

- 탕수육전문점 : 중국요리(391)
- 포도즙(농장에서 즙으로 만들어 왔을 때) : 과채
류음료(354)
- 피자(외식) : 양식(392)
- 학교 구내식당에서 외식비 : 기타식사외식(393)
- 학교급식 후원금 : 학교급식(395) → 명목이 뚜
렷하므로
- 해바라기씨 초코렛 : 초코렛(331)
- 호떡, 붕어빵 : 기타빵(325)
- 호박중탕한 것 구입 : 건강식품(374)
- 호박중탕할 때 달이는 샀 : 식료품가공비(380)

2. 주 거(400~429)

- 가스밸브 렌지후드 교체시 : 설비용품 및 기구
(409)
- 가스설치비 : 줄 → 주택설비용품 및 기구(409)
- 관리금예치금 : 아파트 전입시 관리금을 예치했
을 때 공동주택관리비(420)
- 국유지,시유지 사용료 : 월세(400)
- 도시가스 누출 점검료 : 기타주거비(429)

- 못,ニス,사포등 소모성 반제품 : 기타수선재료 (408)
- 벽지띠 : 도배지(405)
- 보일러수리 출장비 : 주택수리임(410)
- 세 콤 : 기타주거비(429)
- 아파트 보조키 : 설비용품 및 기구(409)
- 주택부금을 내주기로 계약한 세든 가구가 주인 가구의 주택부금을 매월 불입하는 경우 : 월세(400)
- 주택수리시 인부들에게 제공하는 식대, 술값, 담배값 : 주택수리임(410)
- 코 콤(방범설치사용료) : 기타 주거비(429)
- 화장실 커튼봉, 고리 교체시 : 설비용품 및 기구 (409)

3. 광열·수도(430~450)

- 목욕탕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목욕탕 방 1개를 얻어서 살 경우 주인이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대신 납부하여 줄 때 : 현물소득으로 처리
 - 전기요금(4361), 상수도요금(4301), 하수도요금(4311)

4. 가구집기 가사용품(460~579)

- 가스설치비 : 가스용기 → 가정용기기(499)
- 가정집 에어컨가스 : 기타가사소모품(539)
- 냉장고, 전자레인지 부품을 A/S를 받았을 때
: 가구집기수선료(574)

※ 가구에서 부품을 사다 썼을 때는 해당품목
으로 분류
예) 냉장고부품→냉장고(480), 전자레인지부
품→전자레인지(483)
- 대리운전료 : 가사사용인급료(570)
- 드라이아이스 : 기타가사소모품(539)
- 매직웨프 : 가스레인지(484)
- 메밀껍질을 베갯속으로 사용 : 기타침구류(549)
- 모기장(2마, 3마 구입할때) : 기타가사잡화(525)
- 바베큐용 풍로의 품목부호 : 후라이팬(508)
- 변기카바 : 직물로 된 것 → 기타직물제품(559)
직물로 되지 않은 것 → 기타가사잡
화(525)
1회용 카바 → 기타가사소모품(539)
- 보육료(탁아) : 보육료(571)

- 보일러 청소를 방문하여 해줌 : 기타청소료(573)
- 부루스타 : 가스레인지(484)
- 불고기판 : 후라이팬(508)
- 세탁비누를 만들려고 폐유를 구입 : 가사소모품
(539)
- 수족관과 수족관안에 들어가는 내용물
: 기타실내장식품(569)
- 아이들 땀띠분통 : 기타가사잡화(525)
- 에어컨설치비 : 가구집기 및 가사사용품 수선료
(574)
- 오음 발효계 : 기타가사소모품(539)
- 원적외선 주전자 : 주전자(507)
- 유리절단값 : 가구집기 및 가사사용품수선료
(574)
- 이불, 요 등을 이불집에 가져가 재가공(숨을 탐)
해서 이불보를 포함하여 새로운 이불을 만들 경
우 : 이불(540)
- 이불가게에서 이불을 판매준 값 : 가구집기 및
가사사용품수선료(574)

- 일반이 구입한 페넨트 : 기타실내장식품(569)
- 정수기의 맥반석,필터 교체시 : 정수기(485)
- 제기세트 : 홈세트(503)
- 책상유리 : 책상(466)
- 천 부엌용장갑(냄비집게장갑) : 기타가사잡화(525)
- 청소기필터,가스레인지후드에 넣는 필터, 정기적으로 갈아 주거나 소모성이 있는 경우 : 기타가사소모품(539)
- 카메라 건전지 : 건전지(535)
- 커튼샤시,고리 : 기타가사잡화(525)
- 컬러시트 : 기타실내장식품(569)
- 콩나물 재배기구 : 기타가정용기기(499)
- 탁아를 목적으로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 보낼 경우 : 보육료(571)
- 티슈통 : 기타가사잡화(525)
- 포장공임 : 기타가사서비스(579)
- 화분대 앵글조립 : 기타일반기구(479)

- 휴대용 가스레인지 : 가스레인지(484)
- 휴대용 분유통 : 기타주방용기(513) ~~513~~ ⁵¹³

5. 피복 및 신발(580~659)

- 모시천을 구입시 : 한복지(622)
※ 개량정장, 남방은 그 품목으로 분류
- 복주머니 : 기타피복비(639)
- 빨래방에서 빨래해줌 : 세탁료(651)
- 수의 : 기타피복(639)
- 신발갈창 : 기타신발(649)
- 유치원단복 : 학생복(589)
- 이불호청, 레이스 : 기타직물(625)
- 카페트 세탁료 : 세탁료(651)

6. 보건의료(660~689)

- 가정에서 쓰기 위해 구입한 서압봉, 쪽땀, 수지
침 : 보건의료용품(670)
- 단순히 몸을 보하기 위하여 먹는 한약
: 한방보약(661)

- 모기향 훈증기 : 기타보건의료기구(679)
- 병원입원비품(화장지,비누,생리대,수건 등)
: 병원입원치료비(682)
- 병원입원중 사용하는 보호자증 이용료
: 기타보건의료서비스(689)
- 보청기 건전지(30,000원) : 기타보건의료기구
(679)
- 비듬약(리조탈) : 피부외상약(667)
- 산소캔 : 보건의료용품(670)
- 솔감탕, 쌍화탕 : 감기약(663)
- 유축기, 건강팔찌 : 기타보건의료기구(679)
- 임신테스트시약 : 보건의료용품(670)
- 정로환, 토롱환 : 소화위장약(664)
- 종합건강진단(개인이 신청 검사) : 외래진료비
(681)
- 치료를 위하여 먹는 한약(한방감기약)
: 기타한약(662)
- 콘돔 : 보건의료용품(670)
- 한의원에서 지어주는 쌍화탕 : 기타한약(662)

- 한의원에서 진료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조제했을 경우(치료를 위한 한약 포함)
: 기타한약(662) → 한방진료비보다 한약값이 많으므로

7. 교 육 (690~729)

- YJC 학사교재 : 교재비(702)
- 고시생 : 기타보충(713)
- 고시학원비
: 대학생 → 기타보충교육(713)
일반인 → 교육적강습비(782)
- 공무원시험 공부 위해 학원 다니는 학원비
: 학생 → 기타보충교육(713)
일반인 → 교육적 강습비(782)
- 국민학생의 영어, 수학 학원비 : 기타보충교육비(713)
- 대학 재학중인 사람이 고시(영어)학원에 다니는 경우와 실업자가 다니는 경우
: 학생인 경우 → 기타보충교육(713)
실업자나 일반인인 경우 → 교육적강습비(782)
- 대학생 MT회비 : 기타교육비(719)

- 대학생 책 : 기타학교교재(702)
- 대학생이 모스크바로 어학연수를 감
: 일차적으로 내역별로 분류하고 분류가 안되
는 것은 기타교육비(719)로 분류
- 대학생이 영어학원에 다니는 경우 : 기타보충교
육(713)
- 말을 더듬어서 교정학원에 다닐 때 내는 비용
: 기타예능계학원(709)
- 미술학원에서 미술교육외에도 유치원 교육과정
을 모두 가르치는 경우 : 미술학원(708)
- 미취학아동이 가정학습지나 학습교재를 가정
에서 볼 경우 품목분류 및 미취학아동의 교육비
: 취학아동과 동일하게 분류
- ※ 가정학습지(704), 속셈학원(713), 수영강습
비(711), 바둑학원(709), 영어학원(713),
미술학원(708)
- 박사학위 논문을 위한 지출비(학술비, 인쇄비)
: 기타교육비(719)
- 방학동안 학교에서 하모니카, 서예, 글짓기등 교
육을 받을 때 : 기타보충교육(713)

- 사물놀이를 배우러 학원에 감
: 학생 → 기타예능계학원(709)
 일번성인 → 교양오각강습원(780)
- 안전공제회비(학생이 체벌받아 다쳤을 경우에 대비) : 기타교육비(719)
- 유아 및 학생 수영강습비 : 체육계학원(711)
- 유아용 프로그램(한글나라, 우리두리)
: 가정학습비(704)
- 유치원 납입금외에 1년 2회 용도불명의 교재비 지출 : 기타보충교육비(713)
- 인허가가 나지 않은 신학교의 등록금
: 사립대학교(697)
- 자녀의 생일잔치, 크리스마스를 위해 유치원에 갖다준 돈 : 기타교육비(719)
- 컴퓨터 잉크 : 기타문방구(~~729~~) 148
- 컴퓨터 종이 : 기타종이제품(725)
- 코팅료 : 기타문방구(729)
- 학교 기부금을 낼 때
: 명목이 뚜렷하면 → 품목대로 분류
 명목이 없을 때 → 기타교육비(719)
- 학교 또는 태권도학원이나 피아노학원 등에서 가는 소품비 또는 견학비 : 기타교육비(719)

- 학교에서 단체로 돈을 내고 사물함을 설치
: 기타교육비(719)
- 학교에서 일용일에 실시하는 주일학교회비
: 기타교육비(719)
- 학기초 학교에 화분, 교탁보 등을 가져간 비용
: 기타교육비(719)
- ※ 단, 개인의 교제를 위해 학교에 결제, 헌분,
교탁보 등을 가져간 경우는 회비 및 기타교제
비(893)
- 학생들의 페넨트구입비 : 기타교육비(719)
- 학생용 메모판 : 기타문방구(729)
- 학생의 컴퓨터 자격시험 원서대 : 기타교육비
(719)
- 학업목적으로 장애인이 복지회관에 나가 공부를
배움 (회비45,000원을 납부) : 기타보충교육(713)
- 학원이외의 가정교사비 : 기타보충교육(713)

8. 교양오락(730~789)

- CDP : 녹음기(743)
- MC 스퀘어 : 기타교양오락기구(750)

- 각종 게임기 대여에 지불된 비용
: 기타 운동오락시설 및 기구이용료(777)
- 강아지 샴푸 : 애완동물(767)
- 계곡의 자릿세 : 기타 운동오락시설 및 기구이용료(777)
- 고추모종 : 원예용품(766)
- 공갈젓꼭지 : 완구(764)
- 공시청 신청비 : 유선방송시청료(772)
- 꽃꽂이학원이나 지점토학원에 다니는 사람이 재료를 구입했을 때 재료비의 분류
: 취미로 배울 때 강습료에 포함 → 교양오락 강습료(780)
직업을 택하기 위해 배울 때 강습료에 비포함
→ 재료에 따라 분류
예) 꽃꽂이학원 → 꽃(765)
지점토학원 → 공예용품(768)
- 나침반(학생이 아닌 사람이 구입) : 등산납시용품(755)
- 농구골대 : 운동용품(757)
- 대학생 운전교습비 : 자동차운전교습비(781)
- 도서열람료 : 도서대본료(789)

- 디스켓BOX : 기타취미오락용품(769)
- 리모콘(TV, VTR)
 - : TV용 리모콘 → 텔레비전(740)
 - VTR용 리모콘 → VTR(746)
- 만보기 : 운동기구(756)
- 물개쇼 관람 : 문화시설 입장료(778)
- 범양어선에 소속된 자가 배를 타기위해 교육을 받은 연수비 : 교육적 강습료(782)
- 병원입원시 TV시청료 : 기타교양오락서비스(789)
- 불링공 지공비 : 기타교양오락서비스(789)
- 비디오 내부의 먼지를 제거하는 비디오헤드크리너 : 기타취미오락용품(769)
- 서울랜드, 롯데월드와 같이 놀이시설을 위주로 운영하는 곳의 입장료
 - : 기타 운동오락시설 및 기구이용료(777)
- 성인 독서실 이용료 : 기타교양오락서비스(789)
- 성인이 매일 받아보는 교양한문 학습지
 - : 도서(733)
- 수영장 사물함 : 기타 교양오락서비스(789)

- 수족관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
: 수족관에 넣는 약 → 애완동물(767)
수족관과 수족관 속의 장식품 → 기타식내장
식품(569)
- 아파트 관리비 내용중 공청 및 통신유지
: 유선방송시청료(772)
- 안테나선 : 텔레비전(740)
- 애완동물 장신구 : 기타취미오락용품(769)
- 어린이용 농구골대 또는 그네 : 완구(764)
- 여행시 여행가이드비를 개인이 주었을 때(여행
사에서 각개인에게 분담해서 주었을 경우)
: 기타교양오락서비스(789)
- 오락기구용 팩
: 구입시 → 기타취미오락용품(769)
대여시 → 기타오락기구이용료(777)
- 옷가게를 경영하는 가구에서 가구주가 시인인데
시집을 내기위해 출판인쇄비 120만원 지출(시집
은 판매목적이 아닌 주위 친지에게 나눠주고자
함) : 기타교양오락서비스(789)
- 운전면허 시험문제집 : 도서(733)
- 워드 프로세스 리본 : 컴퓨터(748)

- 유치원에 아이들 비디오 촬영비를 냄
: 비디오촬영료(784)
- 일반인의 영어학원비
: 취미,교양을 위해 배우면 → 교양오락강습료
(780)
직업을 택하기 위해 배우면 : 교육적강습료
(782)
- 일반인이 교양을 위한 서적 구입 : 도서(733)
- 자연농원 사과리 입장료 : 문화시설 입장료(778)
- 전자수첩 : 기타교양오락기구(750)
- 주말농장회비 : 기타교양오락서비스(789)
- 직업을 택하기 위하여 학생이 미용학원에 다니
면서 기술을 배움
: 학원비 → 교육적강습료(782)
컷트가위, 머리약 등의 재료비 → 각 품목별
로 분류
- 청군,백군 머리띠 : 운동복(758)
- 컴퓨터 부속 : 컴퓨터(748)
- 컴퓨터 프로그램을 샀을 경우 : 컴퓨터(748)
- 케이블TV 시청비 및 설치가입비 : 유선방송시
청료(772)

- 팩시밀리 구입 : 교양오락기구(750) *822 (팩시밀리)*
시내버스
- 하드디스크, CD롬 : 컴퓨터(748)
- 학원 영어강사가 자신이 공부할 목적으로 영어 테이프와 교재를 구입하였을 경우
: 영어테이프 → 카세트테이프(761)
교재 → 도서(733)
- 학원에 배우기 위해 갔을 때(꽃꽂이, 미용, 공예)
: 취미로 배우면 → 교양오락강습료(780)
직업을 택하기 위해 배우면 : 교육적강습료 (782)
- 회갑때 악단이나 사회자에게 준 돈
: 기타교양오락서비스(789)
- 회사노조에서 단체로 여행을 보내주었을 때 노조에서 지급한 여행경비 : 현물소득으로 보아 단체여행비(7851)로 분류

9. 교통통신(800~829)

- 개인택시를 집에서 사용할 때 : 택시현물처리 (8022)
개인택시
- 남의 봉고로 출근시(무료) : 버스현물처리(8007)
버스
- 남의 자가용으로 출근시(무료) : 택시현물처리 (8027)
자가용

*현물처리에 해당
시내:*

*시내: 8007
시외: 8017*

- 남의 자동차 훼손시 보상한 비용 : 정비수리비 (815)
- 도로사용료 : 통행료(818)
- 렌트카 임차료외의 운전기사에게 주는 팁 : 자동차임차료(807)
- 승용차 구입시 탁송료 : 승용차구입비(810)
- 뽀뽀구입비, 사용료, 대여료 : 무선호출기(824)
- 아마추어 무선사이용료, 면허료 : 기타통신(829)
- 영업용택시 기사가 개인사용시 : 택시현물처리 (8021)
- 오토바이모자 : 관련용품구입(813)
- 이사할 때 기사 및 일하는 사람의 담배, 식사(현물), 팁(돈) 지출 : 화물운송료(808)
- 자가용 월부구입시 : 자가용 월부구입시에는 가계부의 월부 및 외상 구입란에 자가용 구입비 중 일시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입하고 동시에 현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지출란에 자가용승용차(810)로 기입해야 하며 매월 월부금 지불시에는 월부 및 외상값 같은 금액(922)로 기입

- 자동차 견인료
: 고장나서 수리하려고 견인했을 때 → 정비, 수리비(815)
불법주차로 견인됐을 때 → 각종분담금 및 기타(910)
-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 자동차 구입(810)
- 자동차 번호판 : 자동차구입(810)
- 자동차 세차비 : 자동차정비.수리(815)
- 자동차 에어컨에 넣는 가스 : 관련용품구입(813)
※ 기타유지비(819)의 경우는 주로 서비스 관련 지출
- 자동차 엔진오일 : 자동차정비.수리(815)
- 자동차 원격시동장치 : 자동차 관련용품(813)
- 자동차열쇠를 분실하여 다시 열쇠를 맞춤 : 자동차정비, 수리(815)
- 자동차의 왁스등과 같은 소모품 : 자동차관련용품(813)
- 차량용 유류대금 : 자동차연료비(814)
- 차를 임대사용시 도로사용료, 유류대의 분류 : 자동차임대료(807)

- 카폰, 핸드폰 사용료 : 국내전화료(820)
- 카폰, 핸드폰, 카폰 안테나 : 이동전화기(823)
- 타가구의 자가용으로 출근하고 비용을 주었을 경우 : 택시비(802)
 - 단, 1달 버스비에 해당되는 소액일 경우 : 버스비(800)
- 통학을 위해 학생이 시내버스 대용으로 영업용 봉고차로 등하교 할 때 사용대금 : 시내버스(800)
- 팩시밀리 사용료 : 정보통신료(~~826~~) *821 외국 820 국내*
- 폐차값 : 기타유지비(819)
- 핸드폰충전기, 밧데리 : 기타통신(829)
- 회사봉고차로 출퇴근(기름값 직장에서 제공받음) : 버스현물처리(8001)
- 회선연결에 의한 정보통신이용료 : 정보통신이용료(826)

10. 기타 소비지출(830~899)

- 18K 귀금속 : 5만원 미만 → 귀금속(877)
5만원 이상 → 금(876)
- E마트 회원비 : 회비및기타교제비(893)

- 결혼식 행사에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팁을 준 돈
: 관혼상제와 관련하여 분류곤란한 지출비용은
관혼상제비(897)로 분류
- 결혼준비하려고 청사초롱을 삼 : 관혼상제비
(897)
- 껌돈을 모아 일부는 소비하고 일부는 비축하는
경우 : 회비 및 기타교제비(893)
- 관혼상제와 관련하여 식당에서 음식을 일괄적으
로 주문하였을 때 : 관혼상제비(897)
- 국립극장 회원비 : 회비및기타교제비(893)
- 군대간 아들이 휴가를 왔을 때
: 물건을 사줌 → 품목대로 분류
용돈을 주었음 → 기타잡비(899)
귀대시 20만원 정도 주었음 → 기타잡비(899)
- 남자가 미장원에서 머리를 자르거나 파마를 했
을 때 : 이용료(860)
- 단순한 친목도모를 위해 친목껌돈 또는 친목회
비를 내는 경우 : 회비 및 기타교제비(893)
- 등산회비, 낚시회비 : 회비 및 기타교제비(893)
- ※ 회비를 내고 등산, 낚시를 가꾼 갈 때
: 단체 여행비(785)

- 머리깎는 가위 : 기타이미용품(859)
- 머리띠, 머리핀, 머리끈 : 기타장신구(879)
- 면도 거품약 : 기타화장품(847)
- 목욕맛사지요금 : 목욕료(862)
- 목욕탕에서 동전 드라이기 : 기타이미용서비스
(869)
- 변호사 수수료 : 기타수수료(896)
- 상조회, 우리밀회원 가입비 : 회비 및 기타교제
비(893)
- 상추씨앗, 배추씨앗, 고추 및 종묘씨앗
: 기타잡비(899)
- 시내취업정보센터에서 취업에 관한 정보상담료
를 지불했을 때 지불된 비용의 분류
: 기타수수료(896)
- 신랑 신부 양가의 음식비를 어느 한집에서 예식
장비와 포함하여 지출한 경우(폐백음식 포함)
: 관혼상제비(897)
- 쌍방울 야구단 어린이 회원가입비 : 회비및기타
교제비(893)

- 알로에 잎
: 피부에 바르려고 사용할 때 → 기타화장품 (847)
건강식품으로 사용할 때 → 건강식품(374)
- 애기로션 : 화장수(845)
- 유학준비중인 대학생의 아버지가 아들보다 먼저 러시아에 가서 현지상황을 살펴보고 옴. 이때 사람을 사서 통역을 할때 든 비용 : 기타수수료 (896)
- 은행카드 연회비 : 기타수수료(896)
- 일반인 자격증 수수료 : 기타수수료(896)
- 자동차를 구입하여 신규등록시 채권을 구입하고 동시에 이를 팔았을 때 손해난 비용 : 기타수수료(896)
- 재건축 측량비, 복사비 : 기타수수료(896)
- 전별금 : 회비및기타교제비(893)
- 절에 쌀 시주 했을 때 : 종교관련비(891)
- 제사집에 돈, 물건 사갈 때
: 단순한교제 → 기타교제(893)
보조성 → 송금 및 보조(912)

- 집에 있던 금반지를 다시 가공해서 같이 살지 않는 시부모님께 선물로 드림
: 수입란에 재산매각(075)으로 분류한 후 지출란에 회비 및 기타 교제비(893)로 처리
가공비 → 장신구수리비(880)
- 찜질방 이용료 : 목욕료(862)
- 찜질방 체인점(샤워시설, 원적외선온돌방, 노폐물 제거) : 목욕비(862)
- 컴퓨터 시험응시 원서비 : 성인 → 기타수수료(896)
- 크린싱 워터 : 화장수(845)
- 팩시밀리 빌려서 사용한 대금 : 기타수수료(896)
- 폼 크린싱 : 기타화장품(847)
- 할머니가 손자를 낮에만 데리고 있으면서 과자, 병원비를 사용 : 회비 및 기타교제비(893)
- 함에 들어가는 물건의 분류 : 물건을 해당품목으로, 돈은 관혼상제비(897)로 분류
- 해외여행시 여권, 비자를 만드는 비용
: 행정수수료(895)
- 해외취업자가 잠시 귀국 가족과 같이 기거하며 지출한 돈 : 품목별로 분류

- 헤어 드라이 수리비 : 기타이미용서비스(869)
- 화장품중 에센스, 메이크업 베이스 품목부호
: 에센스 → 화장수(845)
메이크업 베이스 → 기타화장품(847)
- 회비 및 교체비와 송금 및 보조간의 품목분류시
에 그 기준
: 회비 및 교체비 → 친척이나 형제 또는 부모
자녀라 해도 보조성이 아닌 단순히
인사성격으로 교체성을 띤 경우
송금 및 보조 → 타가구의 생활에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와 책임이
없더라도 그 가구에 보탬이 되도록
도움의 성격을 띤 정기적 또는 비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경우
- 회사 핸드폰, 삐삐 요금을 직장에서 지불해 줄
때(퇴사시에 반납) : 삭제해 줌

11. 비소비지출 (900~939)

- 같이 동거하던 자녀의 결혼으로 전세금을 냈을
때는(방을 얻어놓기위하여 전세금을 지불했을
때) : 전세금을 냈을 당시 그 자녀가 부모와 동
거했으면 빌려준 돈(927)으로, 비동거 했으
면 기타 송금 및 보조(912)로 분류

- 같이 동거하지 않는 자녀의 전세비용 : 기타 송금 및 보조(912)
- 계를 미리 타고 켜돈을 불입한 경우 : 계부은금액(923)
- 교도소에 있는 자녀에게 물품과 현금 등을 보낼 때의 처리
 - : 미결수 → 각 품목별로 분류
 - 기결수 → 기타 송금 및 보조(912)
- 군대간 아들에게 돈을 보내줌 : 기타 송금 및 보조(912)
- 군대간 아들을 면회가서 용돈을 주고 음 : 기타 송금 및 보조(912)
- 매달 반지계를 부은 경우 계부은금액(923)으로 하고 가구에서 실제로 반지 또는 반지켄돈을 탔을 경우 계탄금액(072)과 귀금속(877)으로 구분
- 목욕탕 운영하는 가구에서 환경부담금을 낼 때
 - : 환경개선부담금은 자영업자(사업자)는 사업상 지출이므로 제외하고 개인이 내는것만 각종부담금 및 기타(909)로 분류
- 부모님 여행을 보내주기 위하여 매달 켄돈을 불입한 경우 계부은금액(923)으로 하고 이를 타서 부모님에게 전해주었을 경우 계탄금액(072)과 기타 송금 및 보조(912)로 구분

- 삼촌집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살면서 재산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 : 유상으로 살면서 추후에 환불받을 것이라면 빌려준 돈(927)으로, 나중에 환불받으면 빌려준 돈 받음(076), 무상으로 살면서 납부하고 환불받을 것이 아니면 기타 송금 및 보조(912)로 분류
- 약 200만원 가량을 도둑맞은 경우 품목분류
 - : 각종부담금 및 기타(909)
- 자녀가 타지에서 하숙 또는 자취하는 경우
 - : 자취 → 교육비 송금(911)
 - 단, 방세 : 전세인 경우 빌려준돈(927)
 - 월세인 경우 교육비 송금(911)
 - 하숙비 → 교육비 송금(911)
- ※ 자취·하숙비를 제외한 교육관련 부대비용은 교육비 송금(911)로 분류
- 자동차 말소세 : 자동차세(902)
- 자신이 여행을 하기 위해 매달 켄돈을 불입한 경우 계부은금액(923)으로 하고 실제로 여행을 간 달에는 단체여행비(785)로 분류하고 계탄금액(072)로 처리
- 장기근속수당을 착오로 받아 환불한 경우 지출에 대한 품목분류 : 기타부채감소(939)

- 저축장려금 : 소득세(900)
- 부(富)의 축재 목적의 겹돈 : 계부은금액(923)
- 주차위반료 : 자동차 관련모든 범칙금은 자동차세(902)
- 주택관계 빌린 돈 이자 : 이자(908)
- 주택부금 용자시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 주택은행용자금 : 주택부금 상환(930)
- 친목계돈에 대한 분류 :
 - 겹돈의 성격을 띤 불입금으로 나중에 친목계돈을 타는 경우 계부은금액(923)으로 분류
 - 금액이 적더라도 한사람씩 교대로 목돈을 받는 경우 계부은금액(923)으로 분류
 - 단순히 친목도모를 위한 목적으로 돈을 모아 식사나 여행 등으로 지출되는 경우 희비 및 기타교제비(893)로 분류
- 친정소유의 집에 무상으로 살면서 주택용자금상환 또는 재산세 등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 : 대신 납부하고 다음에 환불받을 것이라면 빌려준돈(927)으로 분류하고 무상거주하는 대가로 환불받을 것이 아니면 기타 송금 및 보조(912)로 분류

- 크레디트 카드로 타가구에 거주하고있는 부모님의 회갑잔치 식대를 지불했을 경우 : 기타 송금 및 보조(912)
- 토지초과세 1,200만원에 대한 처리
: 살고 있는 주택 및 대지에 대한 세금이라면 재산세(901)로 조사하지만 영업용은 조사에서 제외
- 퇴직 전환금 : 국민연금(905)
- 특정한 목적으로 계를 부은 경우(여행계, 반지계등) : 계부은금액(923)
- 특허사용료 : 수익자부담으로 보아 각종부담금 및 기타(909)
- 학교급식을 위해 서비스 제공을 못한데 대한 벌과금(15,000원) : 각종부담금 및 기타(909)
- 핸드폰,삐삐,카폰가입비 : 빌려준돈(927)
- 핸드폰면허료,교육세,농특세 : 기타세금(903)
- 홀트아동 입양시 수수료 : 각종부담금 및 기타(909)

【 도시가계조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사항을 기입하는 칸】



















